신흥 국제금융센터 경향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신흥 국제금융센터 경향 및 시사점

('26.8.20.,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오만, 인도, 카자흐스탄은 센터 및 특구 지정을 통해 일반 국내 금융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제금융 체계를 운영 중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만은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도는 입주기업과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성장 단계, 카자흐스탄은 제도와 운영체계가 상당 부분 정착된 단계임을 확인

▸ 각 센터는 금융업 인허가뿐 아니라 외환·조세, 기업등록, 외국인 인력, 분쟁 해결 등 국제금융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센터별 이를 통합하는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 각 센터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순 업무 시설 제공 또는 조세감면에서 나아가,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법률·행정·시장 환경임을 확인

▸ 부산에는 해외 제도를 일괄 도입하기보다 해운·조선·항만물류와 연계하여 실제 수요가 있는 국제금융업무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거래에 필요한 금융·외환·조세 특례와 행정을 지원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

1 검토 배경 및 조사 범위

□ 검토 배경

○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업무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고, 금융·외환·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 특구 조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들 금융센터는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금융업 인허가, 외화거래, 분쟁해결, 기업등록, 외국인 고용·체류 등 기업이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 국제금융 기관 유치와 입주공간 공급만으로는 부산금융중심지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흥 국제금융센터의 특화 분야와 제도적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검토 목적

○ 오만(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of Oman, 이하 IFC Oman)·인도(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이하 GIFT IFSC)·카자흐스탄(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하 AIFC) 국제금융센터의 제도와 운영 현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국가별 특징과 공통 경향을 조사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금융중심지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함

□ 검토 대상

〈표1〉 국별 조사 범위

구분	오만 (IFC Oman)	인도 (GIFT IFSC)	카자흐스탄 (AIFC)
설립·운영	2026년 법적 설립, 하위 규정 구축	2015년 IFSC 지정, 2020년 통합감독기관 출범	2015년 특별법 제정, 2018년 운영
정책 목표	경제 다각화와 국제자본 유치	해외에서 처리되던 인도 관련 금융거래의 국내 유치·환류	중앙아시아 국제금융·투자 거점 조성
핵심 방식	독자적 법률·규제·분쟁 해결 체계	특별경제구역 내 외화금융 업무 허용 및 통합감독체계	영미법 기반 특별 금융법역과 독립기관 체계

2 오만 국제금융센터(IFC Oman)

□ 설립 배경 및 정책 방향

○ 오만 술탄은 2026년 1월 12일 왕령 제8/2026호를 통해 오만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오만 국제금융센터법」을 제정함

○ 법 제3조는 IFC Oman을 무스카트주 마디나트 알 이르판(Madinat Al Irfan)에 설치

하도록 규정하며, 왕령은 다른 지역에도 국제금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소재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IFC Oman의 소재 도시를 '무스카트', 법률상 설치 장소를 '무스카트주 마디나트 알 이르판'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 IFC Oman은 오만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를 확대하고, 역내외 자본·금융기관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됨

□ 법적 적용 범위

○ 법률상 IFC Oman 사업자(IFC Oman Establishment)는 'IFC Oman 안에서 또는 IFC Oman을 통해 사업이나 전문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허가 또는 승인받은 자'를 의미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IFC Oman 안에 사업소를 두어야 함

○ IFC Oman 사업자는 오만 일반법령과 IFC Oman 법령에 따라 센터 밖의 오만 지역에 지점·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오만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 다만 센터 밖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오만 일반법령이 적용됨

○ 예외적으로 규제대상 사업자(Regulated Establishment)가 허가범위 내에서 상품·서비스의 홍보·마케팅, 사모·공모 및 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IFC Oman 법령이 적용됨

○ 따라서 IFC Oman의 별도 규율은 센터 안에서 또는 센터를 통해 수행되는 인허가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적용되나, 법에서 정한 일부 센터 밖 활동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 IFC Oman은 독립된 법인격과 재정·행정상의 독립성을 가지며, 경제담당 부총리의 관할에 둠

ㅇ IFC Oman에는 이사회와 함께 운영기관(IFC Oman Authority), 규제기관(IFC Oman Regulatory Authority), 분쟁해결기관(Dispute Resolution Authority)을 두고, 기관별로 운영·감독·분쟁해결 권한을 분담함

ㅇ IFC Oman에는 IFC Oman 법률(IFC Oman Laws), 규정(IFC Oman Regulations), 규칙(IFC Oman Rules)으로 구성된 별도 법령체계를 적용하되, 형사·조세·자금세탁방지·사이버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분야에는 오만 일반법을 적용함

ㅇ 조세 분야에서는 오만 세법을 적용하면서도 IFC Oman법에서 정한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등 별도의 특례를 적용함

〈표2〉 IFC Oman 운영체계

기관	주요 기능
이사회	센터 전략 수립, 법령·예산 승인, 산하기관 감독과 주요 인사 관리
운영기관	기업등록, 투자유치, 기반시설, 행정·비자 지원, 홍보
규제기관	금융회사 인허가, 건전성·시장 행위·자금세탁방지 감독
분쟁해결기관	제1심·항소법원 운영 지원,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관리

ㅇ IFC Oman 법원은 제1심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IFC Oman 법령의 해석과 센터 관련 민사·상사·노동 분쟁 등을 담당함

ㅇ 분쟁해결 기관은 중재·조정기관 설치와 관련 절차 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상 업무와 지원제도

ㅇ IFC Oman 법률은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무 또는 활동으로 금융서비스를 정의하고, 주요 범위로 다음의 업무를 제시함

- 은행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활동, 이슬람금융, 보험, 투자운용 및 자산운용, 투자펀드, 자본시장, 자산운용 및 중개 관련 자문서비스

- 금융서비스를 보조하는 서비스·전문 업무는 부수서비스(Ancillary Services)로 분류하며,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음

※ 부수서비스의 세부 업종과 인허가 기준은 IFC Oman 하위법령에서 정함

ㅇ 조세 분야에서는 다음 소득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최장 50년간 감면(면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IFC Oman 사업자가 조세 규정에서 정한 적격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

※ 적격 활동과 관련한 소득은 IFC Oman 사업자가 조세 규정에서 정의한 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적격 활동, 조세감면 적용요건 및 세부 시행사항은 IFC Oman 이사회가 제정하는 조세 규정에서 정함

※ 추가 혜택의 종류와 적용요건은 향후 세부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법률상 50년을 초과한 적용을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음

- 외국 법인이 IFC Oman 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사용료, 연구개발 대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관리·서비스 수수료, 배당금 또는 이자

- 외국인이 IFC Oman 조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IFC Oman 기관 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얻은 소득

※ 일반적으로 소득법상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IFC Oman의 세제 특례

ㅇ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IFC Oman을 특별구역으로 간주함

ㅇ IFC Oman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그 재산은 국유화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IFC Oman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압류, 동결, 처분제한 또는 몰수할 수 없음

※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은 예외임

ㅇ 경찰·관세 당국은 IFC Oman와 협의하여 센터 안에 여권·민사신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ㅇ 센터 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IFC Oman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관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거주 허가를 부여하고,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소결

○ 오만은 왕령을 통해 센터의 설치 장소, 적용 범위, 기관 구성, 금융업 인허가, 감독, 분쟁 해결, 조세 및 외국인 체류 지원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음

○ 오만 일반법과 구분되는 자체 법령을 두고 운영기관·규제기관·분쟁해결 기관에 각각 독립된 권한을 부여한 점이 특징임

○ 다만 금융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의 세부 범위, 적격 활동과 감면요건, 기관별 절차 등은 향후 하위법령과 조세 규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임

3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 설립 배경 및 정책 방향

○ GIFT IFSC는 구자라트주 간디나가르의 GIFT City 내 특별경제구역에 설치된 인도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임

○ GIFT City는 국내 업무구역(Domestic Tariff Area)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으로 구성되며, GIFT IFSC는 이 가운데 GIFT SEZ에 위치함

○ 본 보고서에서는 소재 도시를 ‘간디나가르’, 세부 입지를 ‘GIFT City 내 GIFT SEZ’로 구분하고, 검토 범위도 GIFT IFSC의 국제금융업무로 한정함

○ GIFT IFSC는 해외에서 처리되던 인도 관련 금융업무를 국내로 가져오고, 국경 간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인도 안에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주요 분야는 외화조달, 증권 발행·거래, 펀드 설정·운용, 보험·재보험, 항공기·선박 리스 등이 있음

○ GIFT IFSC의 은행업무는 달러 등 자유태환(교환) 외화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외화계좌를 통한 예금·대출과 송금 등의 거래가 허용됨

○ 다만 비거주자 거래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도 거주자와의 거래와 일부 루피화

표시 상품도 외환법과 국제금융 서비스 센터청(IFSCA)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음

ㅇ GIFT City는 금융·IT 업무공간과 주거·상업·교통시설을 함께 조성한 계획도시형 복합개발지구이며, 국제금융 특례는 IFSC 승인 사업단위와 허가받은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됨

□ 법적 근거와 통합감독 체계

ㅇ 인도 「특별경제구역법(SEZ Act), 2005」 제18조는 중앙정부가 특별경제구역 안에 국제금융서비스센터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특별경제구역에는 하나의 IFSC만 설치하도록 규정함

ㅇ 입주기관은 GIFT SEZ 사업단위 설치승인과 해당 금융업무에 대한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ㅇ 특별경제구역 입주와 승인업무는 개발위원(Development Commissioner)과 승인위원회(Approval Committee)가 관리하고, 금융업 인허가와 감독은 IFSCA가 담당함

ㅇ 인도 정부는 2019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법(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 Act), 2019」을 제정하고, 2020년 IFSCA를 출범시킴

ㅇ IFSCA는 종전에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이하 SEBI), 보험규제개발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이하 IRDAI), 연금기금규제개발청(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PFRDA) 등이 나누어 맡던 IFSC 관련 권한을 통합함

ㅇ 금융상품·서비스·기관을 감독하는 한편, 새로 허용할 업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장개발 기능도 수행함

ㅇ 인도는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보통법 전통을 갖고 있으며, 성문법을 중심으로 구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가 법원(法源)으로 기능하는 법체계를 갖춤

ㅇ GIFT IFSC를 위해 별도의 영미법 법역이나 독립법원을 설치한 것은 아니며, 기존 인도법 안에서 금융·외환·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구성됨

○「특별경제구역법」에 따라 SEZ 관련 민사소송과 지정범죄를 담당하는 법원을 둘 수 있으나, 해당 법원은 관할주 고등법원의 항소 관할에 속하는 국내 사법기관에 해당하여 GIFT IFSC를 위한 별도 분쟁해결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GIFT IFSC는 자체 법령과 독립법원을 둔 오만이나 카자흐스탄과 달리, 기존 국내 법질서 안에서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특례를 인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주요 금융업무

○ GIFT IFSC에서는 은행, 자본시장, 펀드관리, 보험, 귀금속 거래, 금융회사, 항공기·선박 리스, 글로벌 인하우스센터(GIC, Global In-house Centre), 핀테크 및 지원서비스 등을 취급함

〈표3〉 GIFT IFSC 취급 업무

분야	주요 내용
은행·외화금융	외화예금·대출, 무역금융, 기업 외화조달
자본시장	외화증권 발행·상장·중개·수탁·청산·결제
펀드·자산운용	사모·벤처·헤지·대체투자펀드와 운용사 유치
보험·재보험	국제보험과 재보험업무, 보험중개
항공기·선박 리스	금융·운용리스, 혼합형 거래, 매각 후 재임대 등
핀테크·지원서비스	지급결제, 글로벌 인하우스센터, 회계·세무·컴플라이언스
회계·세무서비스	회계, 세무 및 금융범죄 준수 관련 서비스

○ 법률·비서·경영자문·관리·수탁 등은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부수서비스로 분류함

○ 회계·세무·금융범죄 준수 서비스는 별도의 IFSCA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함

□ 지원 제도 및 운영 현황

○ GIFT IFSC에는 「특별경제구역법」과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라 관세, 거래세, 법인소득 및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됨

○ 혜택은 GIFT City 입주기업 전체가 아니라 승인 사업단위가 허가받은 업무를 통해 얻은 소득과 개별 세법에서 정한 거래에 한정됨

※ 「특별경제구역법」상 혜택은 개발자와 승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승인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 공제도 IFSC 사업단위의 일정 소득에 적용됨

○ IFSC 은행은 지정 외화로 계정을 개설하고 외화예금・대출・증권・파생상품 등을 취급할 수 있음

○ 인도 거주자와의 거래는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및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외환규제상 허용되는 경상・자본거래 범위에서 가능하며, 루피화 표시 거래는 IFSCA가 허용한 상품 한정 취급할 수 있고 거래유형에 따라 지정 외화 결제 등의 요건이 적용됨

○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법인 설립과 별도로 GIFT SEZ 사업단위 승인과 IFSCA 등록・인가를 받아야 함

○ 신청에는 온라인・단일창구 방식이 활용되지만, 기업등록, SEZ 승인 및 금융업 인가는 각 기관의 권한에 따라 별도로 처리됨

○ 거래소, 청산기관, 예탁・수탁 기관 등 자본시장 기반시설도 IFSCA의 감독 아래 거래・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 IFSCA 출범 이후 취급 분야는 은행・자본시장에서 펀드관리, 보험・재보험, 항공기・선박 리스, 귀금속 거래, 핀테크, 지급 결제 및 전문서비스로 확대됨

□ 소결

○ GIFT IFSC는 독립 법역을 만들지 않고 기존 인도법 안에서 특별경제구역 지정과 금융・외환・조세 특례를 결합한 방식임

○ 업권별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IFSC 감독권한을 IFSCA에 모으고, 시장개발 기능까지 함께 부여한 점이 핵심임

○ 하나의 금융감독 기관이 신규 업무의 도입 및 업권 간 조정을 모두 담당함

○ GIFT IFSC는 은행과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펀드, 보험・재보험, 항공기・선박 리스, 핀테크 및 전문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 왔음

○ 선박 리스, 외화조달, 무역금융, 보험·재보험 및 자산운용은 부산의 해양·조선·물류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임

○ 다만 GIFT IFSC는 인도의 대규모 내수시장과 국제금융 수요에 기반으로 하므로, 부산은 제도 전체를 모방하기보다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업무를 선별하여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4 카자흐스탄 국제금융센터(AIFC)

□ 설립 배경 및 정책 방향

○ 카자흐스탄 국제금융센터(AIFC)는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전문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도 아스타나에 설치됨

○ 카자흐스탄은 2015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 관한 헌법적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금융감독기관(AFSA), 법원(AIFC Court), 국제중재센터(IAC), 거래소(AIX) 등을 운영함

○ 주요 목적은 금융분야 투자환경 개선, 국내외 투자 확대, 증권시장과 국제자본시장의 연계, 보험·은행·이슬람 금융·핀테크·디지털 자산 육성임

○ 국내 금융·사법제도 전체를 개편하기보다 아스타나 내 지정구역에 별도의 금융규율과 분쟁 해결 장치를 설계한 방식임

□ 법적 근거 및 분쟁 해결 관련 제도

○ AIFC 법령은 잉글랜드·웨일스 법의 원칙과 규범, 주요 국제금융센터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정됨

○ 민사·상사·금융 및 관련 절차에는 AIFC 독자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자흐스탄 일반법을 따름

○ 영어로 AIFC 법령을 제정하여 활용하며 행정문서와 재판절차 등에도 영어를 사용함

※ 영국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AIFC 법령이 효력을 가짐

○ AIFC 법원은 카자흐스탄의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립법원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됨

○ 국제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AC)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조정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함

○ IAC의 중재판정은 카자흐스탄 국내 중재기관의 판정과 동일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승인·집행됨

□ 조직 및 시장 인프라

〈표4〉 AIFC 운영체계

기관	주요 내용
AIFC 관리위원회	AIFC 발전전략 결정, 연차보고서 승인, 주요 AIFC 법령과 기관구조 결정, AFSA 경영진 임명
AIFC 행정청	발전전략 제안과 이행 지원, 비금융 분야 법령 제정, 국제협력, 참가자·임직원 지원 및 비자·인력유치 지원
AFSA 금융감독청	기업등록·인정·인가, 금융회사와 시장기관 감독,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감독
AIFC 법원	AIFC 관련 민사·상사·금융 분쟁의 재판과 AIFC 법령의 해석
AIFC 국제중재센터	당사자 합의에 따른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 AIX는 헌법적 법률에서 열거한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AIFC의 거래소로 시장기반시설에 해당함

□ 지원제도 및 운영 현황

○ AIFC는 은행, 자본시장, 펀드·자산운용, 보험·재보험, 이슬람 금융, 핀테크·디지털 자산과 법률·감사·회계·컨설팅 등을 등록·인가 대상으로 함

○ 조세는 카자흐스탄 세법을 기본으로 하되, 헌법적 법률에서 정한 소득과 서비스에는 2066년 1월 1일까지 특례를 부여함

- 이슬람 은행, 재보험·보험중개, 투자 펀드 운용·보관, 증권중개·딜러·인수 등 법정 금융서비스 소득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법률·감사·회계·컨설팅 소득

- 금융·전문서비스 관련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일정한 근로소득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증권의 양도차익·배당·이자 등 투자소득

○ 혜택은 모든 등록기업에 일괄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금융·전문서비스와 투자소득으로 한정됨

○ 세제특례가 법에서 정한 특정 금융·전문서비스 소득에 한정되므로, 면세대상 소득과 그 밖의 과세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 법정 금융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이 AIFC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재산세와 토지세 감면이 부여됨

○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은 계약에서 합의한 통화로 금전채무를 표시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 간 거래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도 다양한 통화로 수행할 수 있음

○ 자본이동 관련 외환 계약 등록, 해외 은행계좌 번호 부여, 개별 외환거래 통지 등 일부 국내 절차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 보고방식을 사용함

○ AIFC 내 기업 또는 기관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임직원과 가족에게 최대 5년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음

○ 기업등록과 금융업 인가는 AFSA가 담당하고, AIFC 행정청과 Expat Centre는 비자, 외국인 고용 및 정착을 지원함

□ 소결

○ AIFC는 카자흐스탄 일반법과 구분되는 자체 법령과 독립법원·국제중재센터를

두고, 이를 금융감독·거래소·조세·외환·인력지원과 결합한 금융특구임

○ 잉글랜드·웨일스 법의 원칙을 반영한 법령과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외국 투자자에게 익숙한 계약·재판환경을 제공한 점이 특징임

○ 다만 법적 신뢰는 영미법적 요소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시장 인프라, 전문서비스와 판결·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형성됨

○ AIFC는 조세감면뿐 아니라 법적 예측 가능성, 감독 독립성 및 분쟁 해결 절차도 중요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일반법과 별도의 법령·법원 구조를 병존시키려면 헌법·사법제도와의 정합성, 전문인력 및 장기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함

5 국별 특징 정리

□ 기본 구조

〈표5〉 국별 국제금융센터 특징

구분	오만 IFC Oman	인도 GIFT IFSC	카자흐스탄 AIFC
성격	독자 법률·규제·분쟁해결 체계를 갖춘 신설 금융센터	특별경제구역 내 외화 중심 국제금융서비스 특구	영미법 기반 특별 금융 법역
운영 단계	하위규정·기관 구축	업무 확대와 기관 유치	법원·감독·거래소 가동
주요 목적	경제 다각화·국제자본 유입	역외 금융거래의 국내 환류	중앙아시아 금융·투자 거점
정책 초점	장기 세제 지원과 사업환경 조성	외화금융과 실물경제 수요	법적 신뢰와 자본시장 기반

□ 법률・감독・분쟁 해결

〈표6〉 국별 법체계 특징

구분	오만 IFC Oman	인도 GIFT IFSC	카자흐스탄 AIFC
법률 체계	IFC Oman 독자 법률·규정·규칙	인도 법률상 구역·업무 특례	독자 민사·상사·금융법
영미법	원칙 도입을 표방, 세부규정 마련 중	별도 영미법 법역 없음	법률·판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반영
감독 기관	독립 규제기관 법정 설치·운영체계 구축 중	IFSCA가 업권별 기능 통합	AFSA가 독립적으로 감독
법원·중재	제1심·항소법원과 중재체계 구축 중	국내 법원·중재체계 활용	독립법원·국제중재센터 운영

□ 금융 및 관련 업무

〈표7〉 국별 국제금융센터 내 금융 및 관련 업무 특징

구분	오만 IFC Oman	인도 GIFT IFSC	카자흐스탄 AIFC
은행·외화 금융	핵심 유치 분야	외화금융 핵심 기능	주요 사업 분야
펀드·자산 운용	패밀리오피스 포함 종합 분야	대체투자·펀드관리 확대	투자 펀드·자산운용 육성
리스	전문금융 분야로 제시	항공기·선박 리스 육성	항공금융 등으로 확대
핀테크·디지털자산	육성 분야로 제시, 세부체계 구축 중	핀테크·지급결제 확대	전략 분야로 인가체계 운영
세제·외환	최대 50년 지원 근거	업무·소득별 특례, 외화거래 중심	2066년까지 지원 근거, 계약통화 선택

□ 국가별 차이

○ 오만은 초기 시행 단계로 법적 골격을 먼저 마련한 뒤 하위규정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임

○ 인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자국 관련 거래를 선별적으로 국내로 가져온 뒤, 통합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취급 금융업무를 확대하는 방식임

○ 카자흐스탄은 국내 일반법과 구분되는 국제적 금융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법원·중재·거래소를 실제로 가동하는 방식임

○ 세 국가의 법적 독립성, 주력업무, 시장규모와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단순한 항목 비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6 주요 경향 및 부산 시사점

□ 금융 특구 지정

○ 세 국가는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특정 구역, 외화거래, 비거주자 거래 또는 적격 금융업무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부산도 기존 금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제거래에 필요한 규제·외환 특례를 특정 지역과 업무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은 해양산업 관련 외화조달, 선박금융·리스, 펀드, 보험·재보험 등으로 구체화하고, 허용업무와 거래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범부처 협력창구 마련

○ IFSCA와 AFSA 사례는 금융업 인허가·감독과 신시장 개발, 기업등록 및 투자지원을 기관 간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규제 해석과 행정절차를 일관된 창구에서 제공할 경우 기관별 절차 분산에 따른 진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부산은 독자적인 감독 권한을 갖기 어려우므로 부산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는 사전 규제검토, 사업구조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함

□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 오만과 카자흐스탄은 영미법 원칙, 영어 사용, 독립법원과 중재 제도를 외국 금융회사 유치수단으로 활용함

○ 이는 조세지원과 함께 계약 해석, 담보 집행 및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부산은 별도 법역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영문 표준계약, 해사·금융 중재, 외국법 자문, 회계·세무·가치평가·수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금융 수요 대응

○ GIFT IFSC는 항공기·선박 리스, 외화조달, 펀드관리 등 인도 기업의 실제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음

○ 해외에서 처리되던 자산관리, 법률·회계, 결제 및 위험관리 기능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관련 수수료와 부가가치를 국내에 남길 수 있음

○ 부산은 지역 강점을 활용하여 해운·조선·항만물류와 연계된 선박금융, 리스, 해상보험·재보험, 운임·환율·탄소 위험관리, 해양산업 투자 기관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외환·비자·행정의 패키지화

○ 신흥 금융센터는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외화계정, 자본 송금, 외국인 고용, 기업 등록 및 사무공간을 함께 지원함

○ 개별 혜택의 규모보다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산의 지원제도도 단순 입주보다 운용·심사·결제·위험관리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전문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적용 방향

〈표8〉 단계별 부산 적용 방향

단계	주요 과제	검토 내용
단기	특화업무 선정 및 협의체 운영	해양금융·외화거래 수요조사, 규제 쟁점 정리, 중앙정부 사전협의, 샌드박스·특구의 부산 적용 방안 도출
중기	금융거래 특례 및 전문서비스 기반 확충	해양산업 투자기구(기관) 유치를 위한 외화 계정·결제 및 선박리스·보험 관련 특례 검토, 영문계약·중재·수탁·평가 등 거래 인프라 확충
장기	법률·제도 기반 정비	금융중심지 관련 법령, 세제·외환 특례, 전담 지원조직과 분쟁 해결 인프라 제도화

□ 종합 의견

○ 신흥 금융센터의 공통점은 단순히 대규모 시설의 조성이나 파격적인 조세감면뿐만 아니라, 특정 국제금융거래를 한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외환・조세・행정지원을 묶어 제공한다는 점임

○ 현시점의 부산에는 오만이나 아스타나와 같은 독립 법역보다 인도 GIFT IFSC의 선택적 외화금융 특구 방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임

○ 부산의 강점은 대규모 내수시장이 아니라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에 있으므로, 금융 특례도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중심으로 한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책은 기관을 먼저 유치한 뒤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육성할 거래와 금융상품을 정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